

의안 검토 보고서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. 8. 24. 대전광역시장
2. 건 명 : 대전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3. 안 건 요 지 : 따 로 붙 임
4. 검 토 의 건 : 따 로 붙 임

위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7년 9월 일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전문위원 장 예 순

대전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

본 안건은 2007년 8월 24일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1. 제안이유

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신·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 제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신·재생에너지설비 확대보급을 위한 시·구 및 설치의무 기관장의 책무를 명시함(안 제5조, 제6조 및 제7조의2).
- 나.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추진에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함(안 제19조).

3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의 개정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신·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,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관용차량 구입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을 권장하는 등 개정된 법령의 기준에 적합하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